

● 제320회 ●
서울특별시의회(임시회)
제1차 보건복지위원회

서울특별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
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검 토 보 고 서

2023. 9. 4.

보 건 복 지 위 원 회
수 석 전 문 위 원

【 황유정 의원 대표 발의 】

의안번호 1079

I. 조례안 개요

1. 발의자 및 제안경과

- 가. 발 의 자 : 황유정 의원의 45명
- 나. 발 의 일 : 2023. 8. 14.
- 다. 회 부 일 : 2023. 8. 21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가. 제안이유

- 4차 산업혁명 기술의 발전으로 디지털 사회로의 대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일하는 방식 변경과 함께 새로운 직업의 창출이 이어지고 있음.
- 디지털 기술의 습득은 재직 여성의 직무역량강화를 통한 고용 유지전략은 물론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에 필수요건이 되면서 여성의 디지털 기술 습득에 대한 욕구가 상승하고 있으며 여성의 눈높이에 맞춘 디지털 직무역량교육이 요구됨.
- 이에 따라 서울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

해 디지털직무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사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시장이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 디지털 직무역량 강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함. (안 제6조제1항제8호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」

나. 예산조치 : 해당없음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참조)

다. 기 타 : 신·구조문 대비표 참조

II. 검토의견 (수석전문위원 주병준)

1 개정안의 개요

- 동 개정안은 4차 산업혁명 기술 발전으로 디지털 사회로 대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여성의 눈높이에 맞춘 디지털 직무역량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함임.

2 주요사항 검토

□ 디지털 직무역량 강화(안 제6조제1항제8호 신설)

- 개정안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시장으로 하여금 디지털 직무역량 강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.

<신·구조문대비표>

현 행	개 정 안
제6조(경제활동촉진사업) ① 시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. 1. ~ 7. (생략) <u><신설></u> 8. (생략)	제6조(경제활동촉진사업) ① --- ----- ----- ----- 1. ~ 7. (현행과 같음) <u>8. 디지털 직무역량 강화</u> 9. (현행 제8호와 같음)

- 디지털 기술은 여성들이 다양한 서비스에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고 더 많은 정보를 활용하여 경제적 독립성과 생산성을 높임으로써 양성평등에 긍정적으로 기여하기도 하지만,
- 기술의 발전이 급속하게 이루어지는 상황에서는 ICT에 대한 접근성과 사용에서의 성별 격차는 디지털 성별 격차 심화라는 양상으로 나타나기도 하며¹⁾, 코로나19로 원격교육, 재택근무 등이 필수로 자리잡으며 디지털 양성평등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음.
-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22년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에 따르면 디지털정보화수준 종합평가지표에서 여성은 96.4점, 남성은 103.6으로 남성이 더 높게 측정되었음.
 - 뿐만 아니라 각 부문에서도 남성이 여성에 비해 높게 측정되어 디지털 성별격차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.

<2022년 디지털 정보 격차 실태 종합>

구분	일반국민	여성	남성
디지털정보화 접근 수준	100	98.4	101.6
디지털정보화 역량 수준	100	92.8	107.2
디지털정보화 활용 수준	100	92.8	100
디지털정보화 수준(종합)	100	96.4	103.6

- 따라서 디지털 성별격차를 해소하고 여성의 경제활동과 경력단절

¹⁾ 정보통신정책연구원, ‘[초점] 팬데믹 시대의 디지털 양성평등’, 2021.7.13.

예방을 위해 디지털 직무역량 강화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려는 본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매우 타당하다 하겠음.

- 또한 디지털 직무역량 강화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디지털화된 직무 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중·고령자나 장기 경력단절여성 등을 대상으로 기본적인 ICT 교육 등 디지털 환경 적응을 위해 필수적인 직무 교육과정을 실시하고, 청년이나 실무자, 고학력자 등을 대상으로 디지털 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디지털 분야 실무·전문 교육과정 중심의 추진이 필요해 보임.

3 종합 의견

- ICT에 대한 접근성과 사용에 대한 성별 격차는 디지털 성별 격차라는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, 코로나19로 원격교육, 재택근무 등이 필수로 자리 잡으며 디지털 양성평등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음.
- 동 개정안은 디지털 대전환시대를 맞이하여 여성의 디지털 직무역량을 강화하여 여성의 고용안정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 발의되었으며 입법취지가 타당하다고 보여짐.
- 대상의 특성에 따른 맞춤형 디지털 직무역량 교육 등을 통해 성별 디지털 격차를 해소 및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을 예방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.